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5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 김 윤 · 장종태 · 모경종

오세희 • 민병덕 • 임미애

윤건영 · 김선민 · 최민희

양부남 · 강준현 · 민형배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차단 조치가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
	가능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
	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
	여금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u>수 있다.</u>
<u> <신 설></u>	⑦ 제6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
	여는 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
	원회"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u>본다.</u>

6. ~ 8. (생략)

1173소(별식)
<u>.</u>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u>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
<u>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u>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8. (현행과 같음)